

‘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’ 가입 보고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 출 일 : 2026. 8. 31.
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- 道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과밀억제권역 내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 및 제도적 제약에 공동 대응하고,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건의 등을 추진하고자 ‘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’를 구성함.
-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들 간 정책·제도 및 대응사례 공유, 공동연구용역 등을 통해 체계적·효율적인 제도개선 건의를 추진하고자 ‘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’ 가입(안)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69조제2항에 따라 의회 보고하고자 함.

2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69조제2항

3. 주요내용

- 공동대응협의회 운영
 - 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정기·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규제 관련 지역 현안사항 공유,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, 실무협의회 및 TF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 및 중앙부처와 간담회 개최 등 규제완화 적극 추진
- 공동대응협의회 가입 필요성

- 우리시 과밀억제권역 내 주요 규제 개선 건의를 지속 추진하였으나, ‘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 지침 시행’ 등 상급기관의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 강화로 향후 추진 지난 예상
- 과밀억제권역 정책·제도 및 대응사례 공유,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인 건의안을 마련하여 우리시 제도개선 요구를 보다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 필요성 대두

4. 추진현황

- 2023. 11. 30. : 공동대응협의회 구성 (남양주, 시흥 제외)
- 2024. 09. 13. : 공동대응협의회 시흥시 추가 가입
- 2026. 07. 13. : 공동대응협의회 가입 요청(수원시 → 남양주시)

5. 향후일정

- 2026. 09. : 시의회 보고 및 협의회 운영규약 고시

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

2023. 11. 30. 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회의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(이하 ‘협의회’라고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협의회는 과밀억제권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규제를 해소하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정책을 추진하여 자치단체 간 공동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
2.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
3.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, 교육,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 강화
4.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·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
5.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한 사항

제4조(구성) ① 협의회는 과밀억제권역 내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,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

②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약과 의결사항의 준수 및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.

제2장 조직 및 임원

제5조(임원) ① 협의회의 임원은 대표회장 1인, 수석공동회장 1인, 실무추진공동회장 1인, 나머지는 공동회장으로 한다.

② 대표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③ 대표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대표회장 유고시에는 수석공동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감사) ① 협의회에 감사 1인을 두며, 공동회장 중 호선한다.

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를 감사하고, 그 결과를 보고한다.

제7조(임원의 임기) ① 대표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충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,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.

제3장 협의회 운영

제8조(회의 및 의결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대표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대표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협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대표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.

제9조(의안의 제출) ① 대표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대표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대표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안건의 배부)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.

제11조(의견의 청취)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- 제12조(회의결과에 대한 조치)**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대표회장은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대표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,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 하여야 한다.

- 제13조(자문위원)**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표회장이 위촉한다.
1. 국가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사람
 2. 관련 단체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사람
 3. 관련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중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
- ③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, 회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14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

한 실무적인 사전검토 및 사후진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- ②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사무국장이 주관하고, 회의는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.
- ④ 실무협의회는 회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,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.

- 제15조(사무국)**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, 사무국장과 간사를 둔다.
- ② 사무국장과 간사는 대표회장 소속 담당부서장과 담당 팀장으로 한다.

제 4 장 재 정

- 제16조(경비부담)**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,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며, 각 자치단체 당 연 200만원으로 한다.

- 제17조(수당 등)**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제18조(회계보고 및 결산)**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② 협의회회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,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협의회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제19조(규약 개정)** 이 규약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20조(운영세칙)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회장이 정한다.

제21조(해산) 협의회가 해산될 때에는 정산 후 각 소속 자치단체에 반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용규약)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약에 따른다.